[공지] 2025년 공주대학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URL: https://www.kongju.ac.kr/bbs/KNU/2133/403815/artclView.do 작성일자:2025.02.13

관련: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025년 공주대학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게시하였으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2025년 공주대학교 안전관리계획 1부

Attachments:

• https://www.kongju.ac.kr/bbs/KNU/2133/619267/synapView.do

2025년도 대학 안전관리 계획



2025. 1.



목 차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1
1. 목표 및 기본방향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 유형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10
1. 재난 10
① 자연재난10
② 사회재난 12
2. 안전사고 14
① 대학 안전사고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17
③ 연구실사고
3. 감염병21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1
4. 범죄
① 일반범죄
② 성범죄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28
① 산업재해 28
② 중대재해 31
6. 기타 33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33

목 차

Ш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과 지원 체계 마련	35
IV	안전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 …	38
٧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49
۷۱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2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53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54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55

대학 안전관리 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학 생활 구현



목표

재난안전사고 예방·대비 체계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추진과제

1

교육시설물 안전 관리

- 재난 · 안전의식 확산
-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위험시설 해소

2

자연재난 대응 · 대비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
- 자연재난 대비 체계의 현실화

3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예방·관리

- 감염병 예방 역량 강화
-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 및 대비

4

폭력 및 정신건강 관리

- 폭력(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
-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5

체험학습 등 학생활동 관리

-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 교사 및 학생 대상 안전 교육 강화
-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

□ 목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방-대비-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요인의 체계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복구를 통해 대학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
-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며, 조직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

<위험요인별 관련 법률>

구 분	관련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방침

- 안전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하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실시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조치를 위한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의사소통 체계 운영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마련 및 정기 적인 합동 훈련을 통해 협력 및 대응 역량 강화

□ 수립 절차

○ (계획 수립)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총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시행

- (계획 제출) 총장은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을 지체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통보
 - ※ 관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3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국립공주대		설립 구	분	국립	
주 소	충청남도 공주시 공	6				
전 화	041-850-8114	FAX	041-85	50-8083	홈페이	XIwww.kongju. ac.kr
총장	임경호	총괄안전 책임자(김-	봉기(안	전관리센터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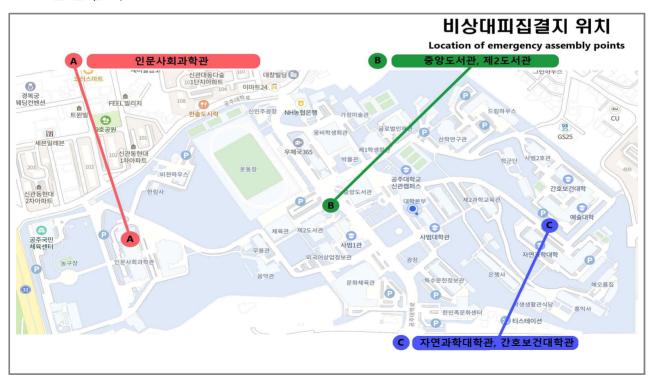
(기준: 2023년)

학생	학부생	대학원	합계	비고
(명)	12,167	2,943	15,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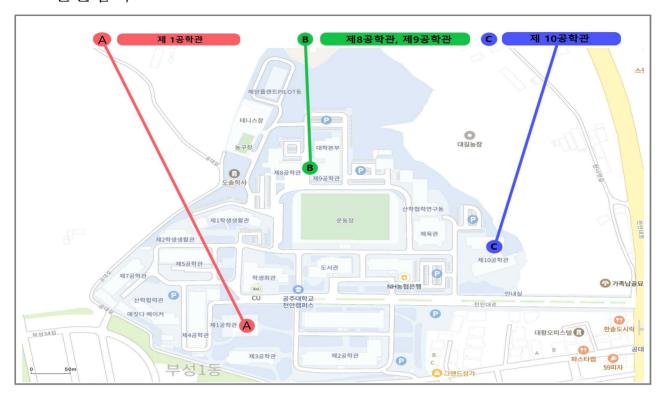
교직원	교직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기타	합계
(명)	544	569	179	0	0	1,292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신관캠퍼스



○ 천안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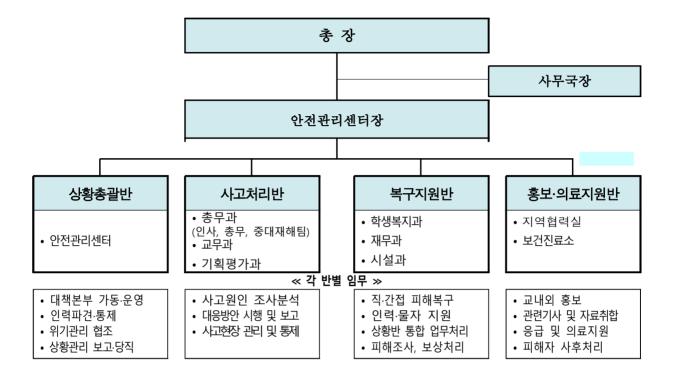


○ 예산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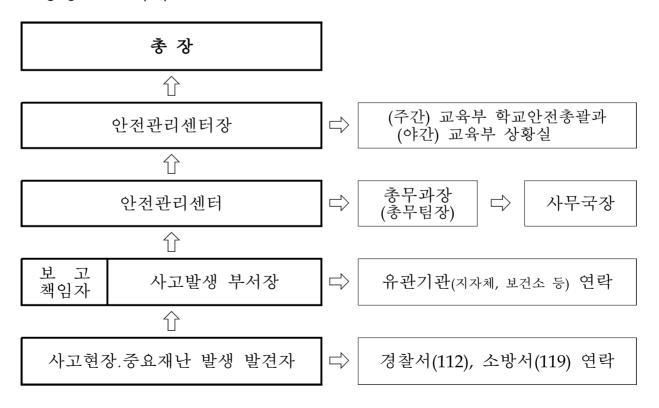


2 조직체계 현황

○ 재난안전관리체계



○ 상황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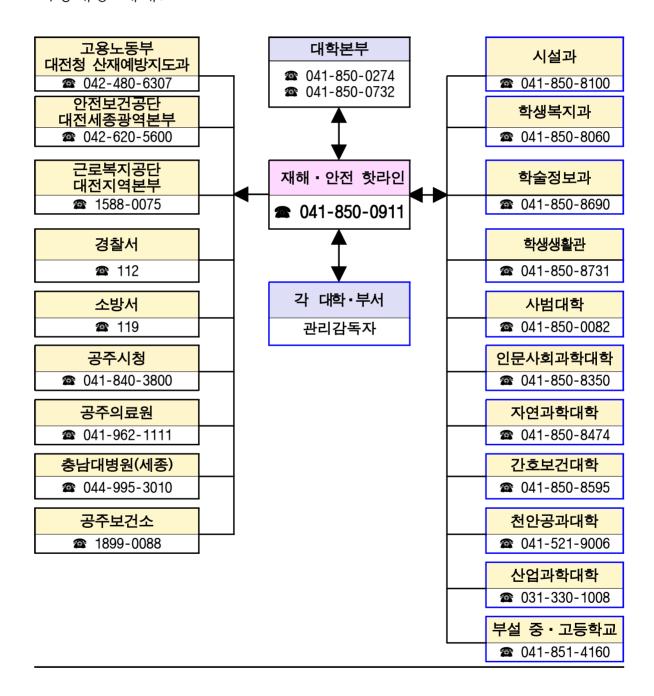
○ 재해·안전 핫라인 비상대응 체계

• 사고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각 대학 및 부서 등*)

 1단계
 상황전파
 작업중지
 교해자 조치(병원이송)
 고급대피
 신고(소방서 등)

 2단계
 항라인 보고
 항라인 보고
 하장보존
 사고원인조사

• 비상대응 체계도



※ 각 대학·부서에서는 사고발생 시 신속히 1단계 조치 후 핫라인으로 상황보고

- (비상시) 재난 상황실 운영 : 관심 / 주의, 경계, 심각단계로 구분
 - · 단계별 운영개념
 - 1단계(관심, 주의단계): 대학에 직접영향은 없으나 관심 필요시
 - · 일과 시간 內 : 참모부서별 상황 모니터링(안전관리센터, 총무과, 시설과)
 - · 일과 이후 : 당직실과 연계하여 모니터링(안전관리센터, 총무과, 시설과)
 - · 담당부서별 기상상황 확인 및 자체조치
 - ※ 예) 지역 내 호우주의보, 태풍 예비특보 발효 시
 - 2단계(경계단계): 대학에 간접 영향 또는 피해 우려시
 - ·재난상황실 24시간 운영 : 안전관리센터 재난안전팀 + 시설과 + 총무과
 - 장소 : 안전관리센터
 - 주요활동 : 상황유지 및 담당부서 재난상황 종합, 주요직위자 상황보고
 - · 담당부서별 비상근무체계 : 시설과, 총무과, 각 단과대학
 - · 안전관리센터 재난안전팀에서 상황종합 및 전파, 통보
 - ※ 예) 지역 내 호우경보, 태풍 주의보·경보 또는 극심한 피해 우려시
 - 3단계(심각단계): 대학 피해발생
 - ·사고수습 대책반 운영 : 상황총괄발, 사고처리반, 복구지원반, 의료지원반
 - 장소 : 대학본부 10층 대회의실 또는 별도 지정장소
 - 인원 :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명시된 부서 및 인원
 - 반장 : 안전관리센터장 또는 사무국장
 - ※ 상황총괄반에서 상황종합 및 전파, 통보
 - 장소 : 2단계(안전관리센터), 3단계(대학본부 10층 회의실 또는 지정장소)

□ 담당부서 현황

구 분	위 험 유 형	주 관 부 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센터	관련 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안전관리센터	시설과
1. 14 6	사회재난	총무과	시설과
	대학안전사고	학생복지과	천안공대, 산과대
2. 안전사고	교육시설안전	시설과	천안공대, 산과대
	연구실 사고	안전 관리센터	시설과,천안공대, 산과대
3. 감염병	코로나 19 등 감염병	보건진료소	학생복지과
4. 범죄	일반범죄	총무과, 교무과, 학생복지과	
	성범죄	인권센터	
5. 산업재해	산업안전	안전관리센터	
	중대재해	총무과	
6. 기타	비상사태	총무과	

유형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공석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태풍, 호우, 대설, 지진)

- (태풍) 열대저기압의 중심부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면 태풍으로 명명됨
 - 태풍 발생 시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해 홍수, 산사태,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피해, 안전 위협, 수업 결손 등 다양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
 - 국지성 집중호우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는 급격한 비의 집중으로 인해 산사태, 대학 시설물의 붕괴 및 매몰 위험, 운동장과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를 초래
- (대설) 일정 시간 동안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
 - 도심 내 주요 도로의 통행 불가와 고립 지역이 발생하여 인해 학생들의 등교에 차질이 생기며, 학생 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척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지판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 전력공급, 방송 통신 시설 피해 손상 등이 발생하며 기반 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복구 작업의 지연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원인분석 : 해당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훈련 실시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침수·붕괴·산사태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해요인 사전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 관련 매뉴얼: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4)

2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팀장	0 **	041-850-0740	화재
팀장	시설과	팀장	윤**	041-850-8123	시설물
팀장	보건진료소	팀장	우**	041-850-8754	미세먼지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화재·폭발, 건물붕괴, 미세먼지)

- (화재)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혹은 방화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연소 현상으로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화학적 폭발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성	생건수 -	-	_	1	_	-	_
재산피형	해(백만원)					2,552	2,552.00
인명피해	사망(실종)						
	부상						
	계					2,552	2,552.00

□ 원인분석

- 노후 실험장비(발열장비 등) 과열로 인한 화재
 - 생명과학과 유리온실(104호)에서 석사과정 실험실습을 위해 노후 발열장비 사용 중 화재 발생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실험실습실 안전점검 체계 구축
 - 발열기능이 있고 장시간 무인으로 가동되는 장비 중 내용연수가 초과한 실험장비는 연 2회 장비 안전점검 실시
- 화재예방을 위한하여 소방계획서 수립 및 시행, 각 건물별 (147동) 자위소방대 조직 운영
 - 소방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용역(종합 점검 등 연 12회 점검)
 - 화재취약시설(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연2회 무각본 화재대피훈련 실시

대책명		비고				
ମକ୍ଟ 	2023	2024	2025	2026	합계	미쓰
소방시설관리용역	1,04	1,60	1,70	1,80	614	
합동소방훈련	0.1	0.1	0.5	0.5	1.2	
소화기 교체	6	6	8.4	8.4	28.8	
 계	110.1	166.1	178.9	188.9	615.2	

2. 안전사고

Ⅱ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복지과	팀장	0= **	041-850-8037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신관캠퍼스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대학생 집단연수 등 자치활동) 학생자치기구가 주관하는 행사, 집단 연수(OT, MT 등) 중 발생 하는 안전사고로 교통수단, 숙박시설, 단체 활동 등에 의한 사고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16	13	61	70	54	42.80
재산피해(백만원)		-	_	_	_	_	
	사망(실종)	_	_	_	_	_	
인명피해	부상	16	13	61	70	54	42.80
	계	16	13	61	70	54	42.80

□ 원인분석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미준수
 - 개인 이동장치(킥보드), 학생회 집단연수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예방교육 미흡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① 예방·대응 단계에서 추진계획

○ (교내활동)

- 「공주대학교 학생 단체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 지침」을 통해 학생 단체 활동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를 정함
- 승인권자는 행사 관련 정보,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 후 승인
-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경우 재해대처 안전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행사 관련 계약업체나 서비스 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교외활동)

- 학생 단체 활동 사전 승인 절차 필수화 및 교직원 동행 의무화 시행
- 차량, 숙소, 단체 활동의 필수 항목(학생 단체 활동 자체 안전점검표 및 사전점검 결과서) 행사 전 제출로 점검 강화
- 행사 시작~종료(뒤풀이 포함)까지 행사장 주변 지역경찰서 합동 순찰 및 자체 순찰조 편성으로 안전한 캠퍼스 조성
- 학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복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 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보고 수준 결정

❸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ㆍ시행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검토

- 사고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을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시행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 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음을 확인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네웩링	2023	2024	2025	2026	합계	비고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46	50	34	54	184				
학생 행사 보험									
계	46	50	34	54	184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D8TM \ \ D8M\\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과	팀장	윤**	041-850-8123	공주캠퍼스			
팀원	시설과	팀원	0 **	041-850-8121				
팀장	천안공과대학행정실	팀장	김**	041-521-9032	천안캠퍼스			
팀원	천안공과대학행정실	팀원	함**	041-521-9041	신한캠피스 			
팀장	신업과학대학행정실	팀장	정**	041-330-1050	에시캐교스			
팀원	산업과학대학행정실	팀원	김**	041-330-1053	예산캠퍼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 관련 매뉴얼: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4)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4)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 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시설 파손·이상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 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 관련 매뉴얼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2024)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원인분석

○ 특이사항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해빙기·여름철·겨울철 등 취약시기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 지속 실시
 -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1,000~30,000㎡ 건축물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 용역 실시
 - 정밀안전점검: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 (주변시설) 학교에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 시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가 작성한 '안전성평가'를 검토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

- '25년 교육시설 안전점검 용역비 140백만원
 - 상반기,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점검 120백만원
 -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20백만원
- '25년 교육시설 안전인증 수수료 및 점검용역비 122백만원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네엑덩	2023	2024	2025	2026	합계	비고			
교육시설 안전점검	140	140	140	140	560				
교육시설 안전인증	147	107	122	0	376				
 계	287	247	262	140	936				

③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우**	041-850-9045	고조/ᅯoL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김**	041-850-9045	공주/천안	
 팀장	신업과학대학행정실	팀장	정**	041-330-1050	예산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 신체장애·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 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 활동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시고 유형

□ 피해현황

○ 총 1건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없고, 재산피해 152백만 원 발생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_	_	_	_	1	1
재산피해(백만원)		-	_	_	_	_	0
	사망(실종)	_	_	_	_	_	0
인명피해	부상	_	_	_	_	1	1
	계	_	_	_	_	1	1

- 화학물질 취급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및 부상 발생
 - → 부상자에 대하여 안전공제(보험) 처리 및 특별 안전교육 실시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신규자를 포함한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반기 6시간 이상(연 12시간) 교육 실시 ※ 신규종사자 교육: 학기 초 2시간 집합교육 실시
 - 일상점검: 안전관리담당자가 연구 시작 전 매일 1회 연구실 관리실태 점검
 -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 매년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실 세부 점검 실시
- 유해화학물질·유해인자·독성가스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책임자는 연구 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종사자에게 정보제공 및 교육을 하여 연구실 사고예방
- 실험·실습 시 발생하는 폐시약 및 폐수를 적시·적정 처리하여 유해물질 보관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 관련 매뉴얼: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24년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0백만원
- '24년 연구실 폐시약 및 폐수 처리 용역: 45백만원

대책명		비고				
ମାକ୍ଷର	2023	2024	2025	2026	합계	-175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5	40	40	40	155	
폐시약/폐수 처리	45	45	45	45	180	천안/예산 자체 수립
 계	80	85	85	85	335	

3. 감염병 확산

□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총괄부서	학생복지과	팀장	O= **	041-850-8037	
		주무관	구**	041-850-8036	
실무	ㅂ기지ㅋㅅ	팀장	우**	041-850-8754	
대응부서	보건진료소	주무관	김**	041-850-8831	

□ 위험요인

- 2019. 12.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
- 국가 간 이동증가에 따른 감염병 유입 및 야외활동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일상적 감염병 발생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	14	51	4,179	22	0	853.20
인명피해(사망)	_	_	_	_	_	_

□ 원인분석

-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규정한 법정 감염병으로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체계 운영
 -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조정(2022. 4. 25.)
 -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2023. 8. 31.)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 방역당국 관련 지침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등에 안내
-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교내 환경 관리

- 공용공간, 통학버스, 기숙사 등 대학 시설물 주기적 일상 소독, 다빈도 접촉부위(손잡이, 각종 버튼 등) 1일 1회 이상 소독
- 강의실 및 사무실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는 등 충분한 환기 실시

대책명			비고				
네끡궁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0175
대학회계	82	3	2	1	1	89	
~~~~~~~~~~~~~~~~~~~~~~~~~~~~~~~~~~~~~	236	50	0	0	0	286	
계	318	53	2	1	1	375	

## 4. 범죄

#### ① 일반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여락처 비고 팀장 교무과 교원인사 하** 041-850-0100 교무과 교원인사 궈** 팀원 041-850-8018 팀장 총무과 팀장 바** 041-850-8070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 041-850-0737 팀장 팀장 학생복지과 0=+* 041-850-8037 팀워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팀원 041-850-8036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위험요인

- (폭력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워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 원인분석

○ 특이사항 없음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취약 정보 공유 및 합동 순찰 등 다양한 협력 방범활동 공동 전개, 학교 주변 방범 및 교통관련 시설 설치 시 협의 등
  - 학생들 자체적으로 구성된 순찰팀(학우보호도우미 46명, 안전지킴이 10명)을 구성하여 교내외 정기순찰 및 공주경찰서와 합동순찰을 지속적 실시
  - 학생 캠퍼스 순찰대(주·야간 순찰대)를 구성하여 교내외 정기 순 찰 및 공주경찰서와 합동순찰을 지속적 실시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 · 목격자의 신고 발생 시 경비 및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 · 조치 및 유관기관 신고
  - 건물 출입구를 19:00 이후에는 모바일신분증·출입카드 등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구성원만 출입을 허용하여 외부인 출입 통제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 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 관련 매뉴얼: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대책명			비고			
네 섹 궁	2023	2024	2025	2026	합계	 
통합경비시스템운영 용역	342	344	347	347	1,380	
통합경비시스템 추가설치	_	_	440	_	440	
	342	344	787	347	1,820	

#### ②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text{dom} \\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인권센터	센터장	손**	850-8451					
	겸직	인권센터	과장	성**	850-8035					
	겸직	인권센터	팀장	김**	850-0480					
	겸직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조**	850-0480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김**	850-0481					
-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박**	850-0483					

<담당부서 및 담당자>

##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 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1	2		1	3	1.75
	성폭력			1			1.00
	계	1	2	1	1	3	1.60
피해자 수	성희롱	1	3		1	3	2.00
	성폭력			1			1.00
	계	1	3	1	1	3	1.80

## □ 원인분석

- 우월적 지위·위계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발생** 
  - ※ 대상: 교직원(비정규직 포함), 대학(원)생
- 학내 구성원들이 서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안전하고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조성** 시급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교육) 유연하고 합리적인 관계형성, 일상생활을 성인지 관점 으로 보는 능력과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으로 인식 개선
  - *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 (성희롱 예방)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조력

#### ○ **성희롱 방지조치**(성희롱 예방 지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성희롱 관련 상담, 고충처리 업무 종사자 교육 ·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 운영

- 고충상담원(남/여) 2명 지정 운영
- 고충상담신청서 및 신고서 접수(이메일, 홈페이지) ⇒ 면담 및 조사
- (성폭력 범죄) 공주대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고충상담・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성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체계적으로 조력

대책명		비고					
୳୴ଅ	2023	2024	2025	2026	합계	미프	
대학회계	18	18	18	18	72		
 대학혁신지원사업	45	43	43	43	174		
계	63	61	61	61	246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square$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조**	041-850-0273	

## □ 위험요인

-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상존
  -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 원인분석

- 안전보건관리 **대상 확대** 및 **업무 다양화**로 산업재해 피해자가 증대됨에 따라 **현업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체계** 마련 필요
-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관찰·상담을 통해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조치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 '24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대학의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 관련 매뉴얼: '2025 국립공주대학교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 수행
    -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대상근로자 선정	교육방법 선정	교육 실시	서류보존
<ul><li>전직원</li><li>관리감독자</li><li>신규 입사자</li></ul>	● 위탁/집체/현장/인터넷	● 정기교육 ➡ ● 채용 시 교육 「	● 서류 기록보존 → (3년 보존 권장)

- ※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현업근로자(반기 12시간), 채용 시 교육(8시간)
- 작업환경의 점검 및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월 2회) 및 보건관리자(월 1회) 정기 지도·방문으로 근로자의 작업환경 점검·관찰·상담을 통해 유해인자 파악 및 개선조치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재로 인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 자 발생 시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펴 작성 및 관할 노동관서 에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시행 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u>1개월 이</u>
- **☆** <u>내</u>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대책명		연.	비고			
네웩링	2023	2024	2025	2026	합계	- 1 <u>- 1</u> -
안전보건관리	40	20	20	20	100	본예산
위탁용역비	40	20	20	20	100	
안전보건교육 및	62	66	66	66	260	교육부 국고 지원
위험성 평가 등 용역비	02	00	00	00	200	교육구 속포 시년
계	102	86	86	86	360	

## ②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팀장	총무과	팀장	0 **	041-850-0740	

####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중대재해처벌법」위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발생, 동일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관리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 범위가 도급, 용역, 위탁 등 수급인의 종사자 까지 확대되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위험빈도 총량 증가

#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 원인분석

○ 특이사항 없음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평가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한 후 미흡항목 보완
  - ※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 등 10가지 항목 평가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 건의함" 설치를 통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발생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위험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 (도급, 용역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도급, 용역, 위탁 시 해당 분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행 내용(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등) 점검

대책명		비고				
네엑궁	2023	2024	2025	2026	합계	0175
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 용역	40	38	38	38	154	
계	40	38	38	38	154	

### 6. 기타

### Ⅱ 비상사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팀장	박**	041-850-8070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	041-850-0732	

###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 피해현황

○ 특이사항 없음

### □ 원인분석

○ 전시, 사변, 폭동 등 국가차원의 비상사태는 발생된 사례가 없으나, 관련 법령 및 충무계획 등에 따른 평시·전시 계획수립 및 교육· 후련 실시 필요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 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월 중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연 1회, 1시간 이상)
  - ※ 관련 매뉴얼: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 특이사항 없음

Ш

###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과 지원 체계 마련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공제		
연구실	연구실 안전공제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보험(공제)	시작일	1인당	학생수	연간		보험(공	제)청-	7	
			보험료		총보험료	Ę	민적	+	물적	비고
연도	상품명	종료일	(A)	(B)	(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대학안전사고	2023.12.07. -	_	18,100	32,777	2	149	_	_	
	보상공제	2024.12.07		,	,					

^{*} 보험(공제)청구 건수: '24.2.6. 기준

### □ 보상한도

담보대상	ᆸᄊ급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금포네잉	エおナモ	1인당	1사고당	미포
그 유기 카메시	대인	200,000	1,000,000	공제금액 100,000원
교육기관배상	대물	_	100,000	공제금액 100,000원
교내외치료비	대인(학생)	2,000	2,000	
<u> </u>	대인(신입생)	2,000	2,000	

### □ 보상방법

- 학생은 안전사고 발생 후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 구비 서류 제출
  - 보험사를 통한 구비 서류 심사 후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치료비 보상 기능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치료에 대하여만 보상가능
  - ※ 관련 매뉴얼: 국립공주대학교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국립공주대학교 홈페이지 게시)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회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기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이 경우「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 · 폭발 · 붕괴·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보험(공제)		건물 보험료	건물 면적	연간 총보험료	보험(공제)청구 신체 재물			비고	
연도	상품명	종료일	(A)	(B)		건수		건수	금액	-, <b>-</b>
2025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5-01-01- 2025-12-31	67,054	447,029 m²	96,751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	부담금(천원)	비고
급포네싱	1인당	1사고당	미포
화재(법정금액)	150,000	1,000,000	
시설소유(관리)자	300,000	1,000,000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 1인당 그, ,,, ,		연간	보험(공제)청구				
	보험(공제)		보험료	학생수	총보험료	ç	<u>민</u> 적		물적	비고
연도	상품명	종료일	(A)	(B)	(C)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4.11.01. 2025.10.31.	3.996	9,028	36,080	1	605	_	_	-

### □ 보상한도

	보상한도/자기	부담금(천원)	비고
급포네성	1인당 1사고당		
 유족/장해급여	500,000	_	2021.12.31.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한도액이
	300,000		20억원으로 상향되어 갱신시 반영예정
요양급여	100,000	_	
	100,000		
장 의 비	10,000	_	
	,		
입 원 비	1일 50천원	_	

# **○ 1** 안전 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

### 1. 재난안전한국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대학내 안전관리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공석
팀장	학생복지과	팀장	0=  **	041-850-8037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신관캠퍼스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 대학 구성원 대상 맞춤형 안전교육 및 정기 캠페인 실시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동아리홍보전(학생)	2024. 3. 19.(화) / 9. 9.(월)	1시간	30	_
대동제(학생)	2024. 10. 11.(금)	1시간	10	_

### ○ 추진내용

- 소방훈련, 축제안전지도, 교통사고 예방, 재난 취약시설 점검 등

구분	추 진 내 용
	- 학내 안전관리 조직 및 유관기관 연락처 및 역할 설명
췌ᅅᄭᅱᆮ	- 행사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안내
축제 안전지도	- '24. 상・하반기 학생 축제 안전관리 실적 점검
	- 기타 학생 안전관리 사항 토의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2025년 재난대응	'25년 11월	501	전 교직원 및		
안전한국훈련	예정	5일	학생	_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3월, 9월 등				

○ 추진내용 :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화재 대피훈련, 각종 사고예방 등

구분	추 진 내 용
재난안전훈련	- 학내 안전관리 조직 및 유관기관 연락처 및 역할 설명
	- 행사 현장 안전관리 사항 안내
	- 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 기타 학생 안전관리 사항 토의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학생복지과	팀장	O=  **	041-850-8037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신관캠퍼스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임원 리더십(동계)	2024. 1. 26.(금)	1시간	150	_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4. 2. 16.(금)	1시간	1,000	_
동아리홍보전	2024. 3. 19.(화) / 9. 9.(월)	1시간	30	_
캠퍼스 순찰대	2024. 6. 27.(목)	1시간	9	_
ద씨스 전열네	2024. 8. 29.(목)	2시간	14	_
대동제	2024. 10. 11.(금)	1시간	10	_

구분	추 진 내용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학우보호도우미, 학우안전지킴이)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안전교육> ·2024학년도 1학기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실시 ·2024학년도 하계방학 캠퍼스 순찰대(학우안전지킴이) 안전교육 실시
학생 참여 프로그램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임원 대상 리더십교육 및 안전교육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교육(학생 모니터링단 활용) ·대동제 관련 안전 교육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임원 리더십(동계)	2025. 1월	1시간	80	_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 2월	1시간	1,000	-
동아리 홍보전, 대동제 등	연중			

구분	추 진 내 용
주·야간 캠퍼스 순찰대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 안전교육> · 2025학년도 1학기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실시 · 2025학년도 하계방학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실시 · 2025학년도 2학기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실시 · 2025학년도 동계방학 캠퍼스 순찰대 안전교육 실시
학생 참여 프로그램	· 2025년도 학생자치기구 임원 대상 리더십교육 및 안전교육 · 2025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예방교육 · 학생 참여 프로그램(각종 행사) 사전 안전교육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조**	041-850-0273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 형태	교육시간	인원	예산
현업 근로자	온라인 교육	반기 12시간	221	해당없음
관리 감독자	집체교육	연간 8시간	19	
	우편교육	연간 8시간	19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용
현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 □ 2025년 교육·훈련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 형태	인원	예산
현업 근로자	온라인 교육	209	
관리 감독자	집합교육 / 우편 교육	20	

구분	추 진 내 용
현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 시 교육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 정기 교육

### 4.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 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우**	041-850-9045	공주/천안
팀원	안전관리센터	팀원	김**	041-850-9045	중구/신원
 팀장	산업과학대학행정실	팀장	정**	041-330-1050	예산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1회	6,888	15,000천 원
안전교육	신규교육	연1회	1,042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전교육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 법령 사항

### □ 2025년 교육·훈련 내역

####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반기1회	반기 6시간	15 000천 원
안전교육	신규교육	연1회	2시간/8시간	15,000선 전

구분	추 진 내 용
연구활동종사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화학물질 취급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전교육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 법령 사항

### 5. 감염병 예방교육

####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팀장	우**	041-850-8754	
팀원	보건진료소	ᄌᄆᆌ	박**	041-850-8830	
금권		TTU	김**	041-850-8831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 국외 감염병 유입 및 일상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주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구 분 과정		흿수	인원	예산
	감염병교육(공문 등)	13	전구성원	0원
	에이즈 특강	2	83명	300,000원
감염병 예방 캠페인	결핵예 방캠페인	1	100명	500,000원
	손씻기캠페인	1	100명	1,600,000원
	구충제 배부	1	603명	1,000,000원
	에이즈예방캠페인	1	300명	200,000원

구분	추 진 내 용
	- 감염병(결핵)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홍역)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A형 간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경계→관심) 알림 - 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해외여행 시 주의해야 할 감염병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일본뇌염)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진드기 매기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구분	추 진 내 용
	- 감염병(폐렴구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예방캠페인	<ul><li> 결핵 예방 캠페인</li><li> 손씻기 캠페인</li><li> 구충제 배부</li><li> 에이즈 예방 캠페인</li></ul>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 국가 간 이동증가에 따른 감염병 유입 및 야외활동 증가와 환경변화에 따른 일상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주기적인 교육 및 홍보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교육(공문 등)	8	전구성원	0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감염병특강	1	50	200,000

구분	추 진 내 용
기어버 에비 그의 미 출범	- 주요 법정감염병 교육 및 홍보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 에이즈 등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 6. 성범죄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인권센터	센터장	손**	850-8451	
 겸직	인권센터	과장	성**	850-8035	
겸직	인권센터	팀장	김**	850-0480	
겸직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조**	850-0482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김**	850-0481	
	인권센터	전문상담사	박**	850-0483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생	2024. 3. 1.~ 2025. 2. 28	2시간	재학생 50%이상	
교직원	2024. 3. 1.~ 2025. 2. 28	4시간	교직원 80%이상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과목(LMS, 대면, 시청각)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4개 과목(LMS, 대면, 직장교육)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과목	제한없음*	재학생 50%이상	
70	(LMS, 대면, 시청각)	게진ᆹᆷ 	M = 30 /0 V TO	
교직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제한없음*	교직원 80%이상	
파극권	4개 과목(LMS, 대면, 직장교육)	세원ᆹ <del>ᆷ</del> 	파크전 00 /6이징 	

구분	근거	내 용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ul> <li>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li> <li>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li> <li>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li> <li>(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 내용</li> </ul>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ul> <li>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li> <li>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li> <li>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li> <li>(아동이 교육 대상인 경우)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교육 내용</li> </ul>

### 7. 비상대비 교육·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과	팀장	박**	041-850-8070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	041-850-0732	

### □ 2024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	'25. 11. 5. ~ 11. 7	1시간	298	

#### ○ 추진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 교육	공직자 안보교육

### □ 2025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교직원	공직자 안보교육	1회	600	_

구분	추 진 내 용
비상대비 교육	공주대학교 나라배움터를 통한 사이버 직장교육 - 공직자
	안보교육

###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강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

### 2.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 재난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고
기 한 경	전 화 번 호 e-mail		n) 12
 공주소방서	041-852-0213	_	
신관119 안전센터	041-852-5119	_	
 교육부(총괄)	044 000 6000		재난 및 안전관리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893	_	총괄
교육부 교육시설과	044-203-6183	_	시설관리
	041-640-7910~5	_	
공주 교육지원청 행정과 경리팀	041-850-2361	_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고
기 는 당	전 화 번 호	e-mail	nl 77.
통합상황실	044-203-6600~6602 044-203-6668~6672	_	시교육청
(재난 전 분야)	044-203-6674	_	도교육청
	044-203-6675	_	소속기관
	044-203-6676	_	소속단체,대학

### □ 안전사고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현	비고	
기 는 당	전 화 번 호 e-mail		미포
공주경찰서	041-850-7388	hossi84@police.go.kr	생활안전과
공주 신관지구대	041-858-8903	_	
공주소방서	041-852-0213	_	
신관119 안전센터	041-852-5119	_	
공주의료원	041-850-7700	_	
공주 현대병원	041-850-7700	_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황 실		비고
기 판 당	전 화 번 호	e-mail	니 <u>北</u>
공주시보건소	1899-0088	_	
공주의료원	041-962-1111	_	
서북구보건소(외국인, 접촉자)	041-521-2552	_	
단국대학교 부속병원	041-550-6866	_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041-570-2114	_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_	
천안의료원	041-570-7200	_	
천안우리병원	041-590-9000	_	
예산종합병원	041-330-4000	_	
예산군보건소	041-339-8993	_	
세종충남대학교병원	044-1800-3114	_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044-301-2000	_	

### □ 감염병

 기 관 명	상 홍	비고	
기단정	전 화 번 호	e-mail	
공주시보건소	041-840-3366	_	
천안시 감염병대응센터	041-521-2064	_	
예산군보건소	041-339-6031	_	

### □ 범죄

###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형	황 실	비고	
기원정	전 화 번 호	e-mail	n) T	
공주경찰서	041-850-7388	hossi84@police.go.kr	생활안전과	
공주 신관지구대	041-858-8903	_		
공주소방서	041-852-0213	_		
신관119 안전센터	041-852-5119	_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041-840-4576	klswjj@spo.go.kr		
공주경찰서	041-850-7242	kjc2459@police.go.kr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1366			

### 2] 상황실 운영 시

 기 관 명	상	нΙ¬¬		
기천정	전 화 번 호	e-mail	al <del>T</del>	
공주대학교 상황실	041-850-0119			

##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기 관 명	상 형	비고	
기 한 경	전 화 번 호	e-mail	미포
교육부	044-203-6344	kdh97007@korea.kr	재난 및 안전관리
	044-203-6344	Kuli97007@Kolea.ki	총괄

### □ 비상사태

 기 관 명	상 홍	비고		
기 는 당	전 화 번 호	e-mail	ol 7:	
국방부	02-748-5208	_	_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044-203-6191	_	_	
공주시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041-840-8657	_	-	

### Ⅵ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는 계획 수립, 이행점검, 대책 수립 등
- 위험별 담당부서는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지자체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 연계·협조

### 3.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운영

- 공주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규정
- 공주대학교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 공주대학교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공주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규정
- 공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붙임1

#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호	심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주관부서	
1. 재'	자연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공석		무선구시	
	재난	팀장	총무과	팀장	0 **	041-850-0740	협조부서	
재 난	2	팀장	총무과	팀장	0 **	041-850-0740	주관부서	
	사회	팀장	시설과	팀장	김**	041-850-8102	협조부서	
	재난	팀원	시설과	주무관	장**	041-850-8110	ロエTハ	
		팀장	학생복지과	팀장	O=  **	041-850-8037		
	<u>1</u> 대학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주관부서	
	네 듹 안전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사고	팀원	공과대학	주무관	정**	041-521-9011	협조부서	
		팀원	산과대학	주무관	유**	041-330-1012r		
		팀장	시설과	팀장	윤**	041-850-8123	공주캠퍼스	
2.	2	팀원	시설과	팀원	0 **	041-850-8121	0184	
안전	교육	팀장	공과대학행정실	팀장	김**	041-521-9030	취이퀜교사	
사고	시설 안전	팀원	공과대학행정실	팀원	함**	041-521-9032	천안캠퍼스	
	차코	팀장	살아하다다	팀장	정**	041-330-1050		
		팀원	신압화화행정실	팀원	김**	041-330-1053	예산캠퍼스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우**	041-850-9045		
	3	팀원	안전관리센터	주무관	김**	041-850-9045	공주	
	연구실	팀장	공과대학행정실	팀장	정**	041-521-9045	:50-9045 :21-9045 천안	
	사고	팀원	산과대학행정실	주무관	한**	041-330-1050	예산	
		팀장	-1 JU H -1 -1	팀장	O= **	041-850-8037	총괄	
3.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부서	
0. 감염병	감염병	염병 티지		팀장	우**	041-850-8754	ALD.	
확산		팀장	보건진료소	주무관	박**	041-850-8830	실무	
		팀원	1	주무관	김**	041-850-8831	부서	
		팀장	총무과	팀장	박**	041-850-8070	 직원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	041-850-0737	~~~~	
	1	팀장	교무과	팀장	한**	041-850-0100	교원	
	일반	팀원	교무과	주무관	권**	041-850-8018	개·전	
4. 범죄	범죄	팀장	학생복지과	팀장	0╡**	041-850-8037		
급시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정**	041-850-8033	학생	
		팀원	학생복지과	주무관	구**	041-850-8036		
	2	팀장	인권센터	팀장	박**	041-850-0482		
	성범죄	팀원	인권센터	팀원	최 **	041-850-0481		
5.	1	팀장	안전관리센터	팀장	전**	041-850-0270		
산업 재해	산업 재해	팀원	안전관리센터	팀원	조**	041-850-0273		
및 중대 재해	2 중대 재해	팀장	총무과	팀장	0 **	041-850-0740	주관부서	
6.	1	팀장	총무과	팀장	박**	041-850-0740	조코티티	
기타 ———	비상 사태	팀원	총무과	주무관	김**	041-850-0732	~~~~~~~~~~~~~~~~~~~~~~~~~~~~~~~~~~~~~	

#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	유형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발생건수						
	1	재산피해(백만원)						
	자연재난	사망(실종)						
	' - ' -	인명피해 부상						
1. 재난		계						
<i>개</i> 단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2	사망(실종)						
	사회재난	인명피해 부상						
		계						
		발생건수	16	13	61	70	54	42.80
	1	재산피해(백만원)	_	_	<del>-</del>	<del>-</del>		_
	대학안전	사망(실종) 인명피해 부상	_	_	_	_	_	_
	사고	인명피해 부상	16	13	61	70	54	42.80
		계	16	13	61	70	54	42.80
		발생건수						
2.	2	재산피해(백만원)						
2. 안전사고	교육시설 안전사고	사망(실종)						
		인명피해 부상 계						
		발생건수	_	_	_	_	1	0.20
	3	 재산피해(백만원)	_	_	<u> </u>	_	<u> </u>	0.20
	연구실	사망(실종)	_	_	_	_	_	0
	사고	인명피해 부상	_	_	_	_	1	0.20
		계	_	_	_	_	1	0.20
3.	1	감염자 수	14	51	4,179	22	0	853.20
감염병확산	코로나-19	인명피해(사망)	0	0	0	0	0	0
		발생건 수						
4. 범죄	일반범죄 2 성범죄	피해자 수 발생건 수	1			4	2	0.00
임의		발생건 수 피해자 수	1	3		1	3	2.00
	004	발생건수						
		재산피해(백만원)						
		사망(실종)						
5.	산업재해	인명피해 부상						
산업재해		계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						
숭대재해	2	재산피해(백만원)						
	중대재해	사망(실종)						
		인명피해 부상						
		계						
		발생건수						
6.	1	재산피해(백만원)						
6. 기타	비상사태	사망(실종)						
		인명피해 부상						
		계						

# 붙임3

#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OI ÷	: 0 원	rii 무비미네		연도별	를 예산(백·	만원)		нΙЭ
커 P	범유형 	대책명	2023	2024	2025	2026	합계	비고
	1							
	자연							
	재난	711						
1.		<b>계</b> 소방시설관리용역	85	104	120	149	458	
재 난	2	조랑시절된다용력     화재예방	110.1	166.1	178.9	188.9	430 644	
	사회	합동소방훈련	0.1	0.1	0.5	0.5	1.2	
	재난	소화기 교체	6	6	8.4	8.4	28.8	
		계	201.2	276.2	307.8	346.8	1,132	
	1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보험	46	50	34	54	184	
	대학	가입 및 학생 행사 보험	40	30	04	J4	104	
	안전 사고	계	46	50	34	54	184	
2.		교육시설 안전점검	140	140	140	140	560	
안전	시설	교육시설 안전인증	147	107	122	0	376	
사고	안전 사고	계	186	190	174	194	744	
	3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5	40	40	40	155	
	연구실	폐시약/폐수 처리	45	45	45	45	180	천안/예산 자체 수립
	사고	계	80	85	85	85	335	
3.	1	대학회계	3	2	1	1	7	
감염병	코로나	육성사업	50	0	0	0	50	
확산 	-19	계	53	2	1	1	57	
	1	통합경비시스템운영 용역	342	344	347	347	1,380	
	일반	통합경비시스템 추가설치	_	_	440	_	440	
4.	범죄	계	342	344	348	347	1,437	
범죄	2	대학회계	18	18	18	18	36	
	성범죄	대학혁신지원사업	45	43	43	43	88	
		계	63	61	61	61	246	
5.	1	안전보건관리 위탁용역비	40	20	20	20	100	본예산
산업	산업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	62	66	66	66	260	교육부 국고 지원
재 해 및	재 해	평가 등 용역비 계	102	86	86	86	188	
중대	2	기 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비	40	38	38	38	154	
재 해	중대 재해	계	40	38	38	38	154	
		"				- 55		
6.	<u>1</u> 비상							
기타	사태	7.1						
		계						